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1가단1188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주식회사 C

특별대리인 D

2. E

3. D

4. F

변론 종결2021. 8. 31.

판결 선고2021. 10.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F은 연대하여 654,162,425원과 그중 283,732,41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122,829,798원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 D, F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27,081,212원과 그중 141,866,20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61,414,899원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망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E, D에 대한 청구부분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E이 2015. 6. 15. 상속한정승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94)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부분

피고 F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E의 채무 성격, 원고가 피고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사신중열

별지